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3~2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	2003. 2.
제 출 자	거창군수

■ 개정이유

-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2003.2.28로 도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기한연장 협의에 의거 2003.8.31까지 연장코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종류별·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 까지 연장(부칙 제3조 제2항)

■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
- 지방자치단체 정·현원 관리지침(경남도 행정 12200 ~ 10311, 2003.2.14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541호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중 “2003년 2월 28일”를 “2003년 8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 칙(제1541호)</p> <p>제3조 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3명은 <u>2003년 2월 28일까지</u>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/p>	<p>부 칙(제1541호)</p> <p>제3조 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.</p> <p><u>2003년 8월 31일</u></p> <p>.</p> <p>. . .</p>